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79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

3. 회 부 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건조·개조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
<신설>	1.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신설>	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나. 검토의견

□ 현행 「어선법」(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 제8조는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¹⁾를 발주하려는 자(선주 등)는 해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하에서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²⁾를 받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허가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취소 및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제1항은 ① 제8조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선주 등)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이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해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또는 ②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은 자(조선업체 등)가 건조·개조하는 어선이 속임수나 그 밖의

1)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조”는 어선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가목),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나목),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다목)을 뜻함.

2) 제8조의 어선건조·개조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해수부장관: 원양어선, 해수부장관이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외항화물운송 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해수부장관이 어업 기술보급·시험·조사·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해수부장관이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수부장관이 허가권자인 어선을 제외한 어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이거나 ‘발주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해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0조제2항은 어선건조·개조 허가를 받은 자나 발주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해 어선을 건조·개조(제10조제1항제2호)한 경우 그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벌칙에 따라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선건조·개조 허가 관련 제재 체계]

구 분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 (선주 등)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 (조선업체 등)
건조·개조허가 취득 주체(제8조)	○	X (허가받는 주체가 아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취득 시 (제10조제1항)	허가 취소(필요적)	-
허가사항을 위반해 건조·개조 시 (제10조제1항·제2항)	허가 취소(임의적) + 건조·개조중지, 제거 등 명령 *미이행시 벌칙 (제46조/500만원 이하 벌금)	허가 취소(임의적) + 건조·개조중지, 제거 등 명령 *미이행시 벌칙 (제46조/500만원 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 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벌칙(제43조)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규정없음 ↓ (개정안) 건조·개조중지, 제거 등 명령 *미이행시 벌칙 (제46조/500만원 이하 벌금)

□ 이와 같은 체계에 따라 현행법상 조선업체가 ‘허가사항을 위반’해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제10조제1항), 건조·개조의 중지 등 명령을 할 수 있으나(제10조제2항), ‘조선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³⁾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조선업체의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행위에 대한 관리수단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 어선 건조·개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은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조업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전국 각지에 영세업체 위주로 분산되어 있는 어선조선업체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렵고 어선 불법건조·개조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선 조선업체에 대한 관리수단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어선 불법 건조·개조 단속 건수(어선소유자 대상)]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단속건수(건)	285	29	97	66	49	38	6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개정안은 조선업체 등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⁴⁾에 처할 수 있도록

3)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나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가 어선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4) 제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려는 것으로, 조선업체에 대한 관리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이와 관련된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선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선에 대한 불법 증·개축을 근절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어선건조업체 현황

□ 어선 건조업체 등 관련 현황

○ (대상) 총 331개소*

* 지역별 어선건조 조선소(건조수리) 현황

(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조사/23.7월)

지역	합계	경기인천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개소	264	16	10	12	101	2	2	15	59	27	4	16

(1개 업체당) 연평균 건조수리 규모: 251톤, 고용 인원: 10명(정규직7, 비정규직3), 자체 설계인력 보유: 0.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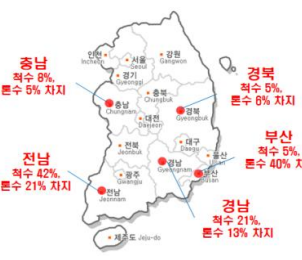
※ (참고) 지역별 어선건조 설계소 현황

지역	합계	경기인천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개소	67	11	2	1	14	-	-	2	11	25	-	1

(1개 업체당) 설계 인원: 8명(정규직7, 비정규직1명), 자격증 인력 보유: 0.4명

○ 전국에 분산되어 영세한 규모로 운영 중인 어선 건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등 제기(해양수산부)

* 친환경·고효율 어선건조 기술지원 부족, 불법 어선 개조에 대한 관리 수단 부재

현재	 충남 척수 8%, 본수 5% 지지 전남 척수 42%, 본수 21% 지지 경북 척수 5%, 본수 6% 지지 부산 척수 5%, 본수 40% 지지 경남 척수 21%, 본수 13% 지지 어선 건조 조선소 분포	 현 대부분의 어선 건조 조선소 실태(분산, 옥외)
개선	 단지화된 어선 건조 조선소	 일부 공장화된 어선 건조 조선소(집적, 옥내)